

우주국 무선설비 []위탁운용 []공동사용 승인서		
신청인	시설자	
	수탁운용/ 공동사용자	
허가번호		
무선설비		
위탁운용/공동사용 기간		
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		
사용 목적		
승인조건		
「전파법」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주국 무선설비의 ([]위탁운용 []공동사용)을 승인합니다.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		